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송옥주 · 서삼석 · 문금주
윤준병 · 임호선 · 이병진
임미애 · 어기구 · 주철현
문대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9.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한 경우

제11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처분 또는 사용한”을
“처분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10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 ----- ----- ----- ----- ----- ----- ----- ----- ----- ----- ----- ----- ----- 1. ~ 4. (생략)
<신설>	<u>4의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신설>	<u>9.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한 경우</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향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6. ----- ----- <u>처분한</u>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